

간병인 중개 표준 계약서

간병인 중개업체(이하 '중개업체'라고 한다)는 간병인과 구인자(환자 또는 보호자)가 아래와 같이 간병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다.

중개업체	상호	주식회사 도원	연락처	1551-1451
	주소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안길 10, 1층(관설동)		
구인자	성명	황신하	연락처	010-7377-3201
	주소	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_롯데캐슬아파트 103동 804호		
	환자와의 관계 (대리인)	본인		
간병인1	성명	김종문	연락처	010-9123-7069
	주소	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, 롯데캐슬아파트 103동 804호		
	관련 자격	배우자		
	간병교육 이수	미이수		

제 1조(목적) 이 계약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간병인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체, 간병인, 구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간병의 범위) 간병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간병 업무를 수행한다.

환자의 식사, 개인위생, 침대시트 교체, 배설, 이동, 목욕, 수면 등 일상생활 보조

약물투여 보조, 체위 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

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

산책, 보행훈련 등 재활훈련 보조

기타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,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, 단 의료행위는 제외한다.

제 3조(계약사항)

① 간병인과 구인자는 간병 개시 전 아래의 내용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간병기간, 간병장소, 간병요금, 지불방식, 기타사항(공휴일·명절 간병 시 요금, 휴일, 식비, 중개수수료,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, 휴게시간 등)

② 제 1항 제 3호의 간병요금을 정함에 있어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 1항 제 4호의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인이 4시간 근무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본다.

[계약사항]

총 간병기간	2026-03-03~2026-03-04	2일간
간병장소	삼성서울병원	

간병요금	정산금액을 간병근무 종료 후 지불한다.				
	1일 간병비		간병일수	지급액	
	88,000		2	176,000	
지급방법	계좌	KB국민은행	096240061416	예금주	김종문
기타사항	1일 간병비는 당사 수수료 포함 금액입니다.				

제 4조(중개업체 의무)

- ① 중개업체는 간병인이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.
- ② 중개업체는 간병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간병비를 선금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.
- ③ 중개업체는 구인자의 간병인 교체 요청 또는 간병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구인자에게 대체 간병인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④ 중개업체는 간병 중개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, 지불 방법 등을 구인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⑤ 중개업체는 간병인 중개에 있어 직업안정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조(간병인 의무)

- ① 간병인은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에 유의하며, 구인자와 합의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간병인은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, 병원이 정한 규제사항을 준수한다.
- ③ 간병인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폭언, 폭행, 상해 또는 성희롱, 성폭력 등 신체적,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6조(구인자 의무)

- ① 구인자는 제 4조에서 정한 간병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구인자는 환자의 건강상태, 감염 가능성, 등 기타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간병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폭언, 폭행, 상해 또는 성희롱, 성폭력 등 신체적, 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구인자는 간병인에게 제 2조에서 정한 간병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⑤ 구인자는 간병인이 24시간 연속 근무를 할 경우 간병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수면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7조(계약해지)

- ① 구인자와 간병인은 상호 합의하에 간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을 따른다.

제 8조(사고 발생)

- ① 간병인은 업무 수행 중 환자의 건강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, 즉시 담당 의료인과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제 9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충분한 상호 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업체, 간병인, 구인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작성일자 2026년 3월 3일

구인자
(환자) : 황신하



간병인 : 김종문



중개업체 : 주식회사 도원

